

#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26
----------	-----

2019년 9월 6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진수 의원 외 9명
- 나. 발 의 일 : 2019년 8월 6일
- 다. 회 부 일 : 2019년 8월 13일
- 라. 상 정 일 :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9년 9월 4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진수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분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토록 함으로써 오염·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가. 국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'손상'을 '오염·훼손'으로 변경함(안 제7조제1항).
- 나. 시민들이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홍보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.
- 다.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하고 관리하도록 함(안 제7조제3항 신설).
- 라. 수거된 국기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함(안 제7조제4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국기법」, 「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19. 8. 19. ~ 8. 26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(「대한민국국기법」)에 따르면,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, 시장으로 하여금 국기 교체 요건을 명확히 하고(안 제7조 제1항),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는 등(안 제7조 제2항) 오염·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(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).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(「대한민국국기법」, 「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) 사항을 조례에 반영 명문화하여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, 존엄성의 수호와 애국정신을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  - ※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·국위·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,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는 등 구체화하고 있음.

### 나. 세부 내용 검토

#### 1) 국기 교체 요건의 변경(안 제7조 제1항)

-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‘손상’에서 ‘오염·훼손’으로 국기 교체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·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·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<u>손상</u> 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.	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오염·훼손</u> ----- ----- -----

- 동 규정은 관련 규정(「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)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바,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(손상)한 현행 국기의 교체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성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※ 상위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,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‘법령체계 정합성’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.

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17조(국기 게양 관리)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**오염·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**하도록 하고,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.

- 다만, 관련법령(「대한민국국기법」, 「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)에서는 ‘오염’ 및 ‘훼손’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, 어느 정도가 ‘오염’과 ‘훼손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바, 용어 사용에 따른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
**〈‘손상’ 등 주요 단어의 개념비교〉**

구분	주요내용
손상	파손이나 파괴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어떠한 조짐이 이미 재료 내부에 형성,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가리킴.
오염	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
훼손	헐거나 깨뜨려서 못 쓰게되는 경우

- ※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별표 7에서는 국기의 품질가공 기준 사항에서 세탁전도도<sup>1)</sup>에서 오염에 대한 표현만 존재하고 있음.

「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[별표 7]

국기의 품질가공기준(제14조제5항 관련)

구 분	기 준	비 고
가. 일광견뢰도	4급 이상	1~8급
나. 세탁견뢰도		
- 변 퇴	4급 이상	1~5급
- 오염	4급 이상	1~5급
다. 발 수 도	90 이상	0, 50, 80, 90, 100

비고 : 등급은 한국산업표준(KS)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등급을 말함.

2) 국기 수거함 설치 및 홍보 규정 신설(안 제7조 제2항)

- 안 제7조제2항은 국기수거함을 서울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설치·운영하여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,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〈신 설〉	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.

- 국기수거함의 설치에 관해서는 「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광역시도에서는 근거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바,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기관리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, 시민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1) 세탁 견뢰도[洗濯堅牢度] : 염색한 천이 세탁 후 색상이 변하거나 다른 천을 오염시키는 정도.

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16조(국기 게양 관리)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민원실,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.

[광역시도별 국기수거함 설치·운영현황]

구분	경기	부산	대구	광주	울산	세종	대전
조례상 설치의무	-	-	-	-	-	-	-
청사내 설치여부	-	○	○	○	○	○	○

- 또한, 민원인의 방문수요가 많은 서울시 본청 민원실 등 산하 공공 기관에도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, 향후 추가 수요에 대비하여 확산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※ 25개 자치구의 경우중 8개 자치구가 국기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,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자치구는 강북·구로·노원·영등포구가 있음.

[서울시 국기수거함 설치·운영현황]

(단위 : 개)

구분	자치구 현황 (‘17.12.31기준)			수거함설치비율	수거량 (월평균)
	계	구청	동		
설치개소	408	20	388	90.7%	1.74
청사 수	450	25	425	-	

※ 비고 : 폐기방식은 자치구별로 상이함.

- 다만, 사업소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경우 민원인들의 방문 등을 고려하여 국기수거함 설치를 통해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본 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3) 국기 수거함 제작의 품격제고와 관리 강화(안 제7조 제3항)

- 안 제7조 제3항은 국기수거함을 제작하고,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기수거함 제작시 재질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하고 설치 장소 등을 국가의 품격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〈신 설〉	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

- 동 조문은 「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의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, 조례에 명시적·명문화를 통해 국기수거함의 제작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16조(국기 게양 관리)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

- 또한, 쓰레기통과 유사한 수거함을 사용하여 국기의 품격을 훼손하거나, 작은 플라스틱함을 구석에 비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바, 국기의 품격에 맞는 수거함으로 교체하라는 행정안전부(2018년 국기관리 실태점검 결과)의 권고 등을 감안한 관리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[잘못된 국기수거함 운영 사례]



※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국기수거함의 용도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품목이지만, 재질·색상·형태·사용법 등이 쓰레기통과 동일하여 주민들이 쓰레기통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.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‘쓰레기 버리지 마세요’라는 별도 안내문을 붙이는 사례가 있었음(출처 : 2018년 국기관리 실태점검 결과, 3면).

#### 4) 수거된 국기의 폐기(안 제7조제4항)

- 안 제7조제4항은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하여 오염·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〈신 설〉	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

- 행정안전부 실태점검(2018년 국기관리 실태점검 결과)에 따르면, 국기 폐기 방법이 직원 파쇄, 시설 소각, 업체 수거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, 폐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#### [광역시도별 국기수거함 관리·폐기현황]

구분	경기	부산	대구	광주	울산	세종	대전
폐기방법	-	직원 파쇄	시설 소각	미실시	업체 수거	직원 소각	업체 수거

- 한편, 한국과 일본간 역사 및 경제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속에서도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보급 등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예산 편성 및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사문화 되어 있는 바, 이와 관련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진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2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6일

발 의 자 : 김진수, 김제리, 고병국,  
김용연, 홍성룡, 송아량,  
권영희, 김경우, 김소양,  
성중기 의원 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토록 함으로써 오염·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국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‘손상’을 ‘오염·훼손’으로 변경함. (안 제7조제1항)
- 나. 시민들이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홍보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.

다.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하고 관리하도록 함. (안 제7조제3항 신설).

라. 수거된 국기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함. (안 제7조제4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10조

「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‘손상’을 ‘오염·훼손’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.
-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</p> <p>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·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·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 <p>&lt;신 설&gt;</p> 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오염·훼손이 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.</u></p> <p>③ <u>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제2항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5,000천원

- 5년간 1회 5,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
- 추계의 전제
  - 국기수거함은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비용(200천원) 외에 운영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
  -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4개 기관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5,000천원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0년)	(2021년)	(2022년)	(2023년)	(2024년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 국기수거함 설치비용	5,000	-	-	-	-	5,000
	소계(b)	5,000	-	-	-	-	5,000
□ 총 비용(b-a)		5,000	-	-	-	-	5,000

○ 국기수거함 설치 비용

- 5년간 1회 발생 비용 ≙ 5,000천원

- 5,000천원 ≙ 200천원 × 25개소(본청 민원실 포함)

※ 자료 : 국기수거함 단가는 인터넷 시중가를 조사하여 적용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예산평가팀장  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